

다양한 직불제 · 경쟁력 강화대책 병행해야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 의무수입량 증가 · 수입쌀 시판 조건 유예기간 중 관세화 전환 가능, 경쟁력 제고시간 확보 다행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는 쌀을 관세화하지 않는 대신 협상결과를 이행하기 시작하는 1995년에 쌀 총 소비량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5만톤을 의무수입하고 이를 10년차인 2004년에 4퍼센트까지 늘려나간다는 특별대우 원칙에 합의하였다.

당시 쌀에 적용한 조항은 '농업협정문 부속서 5'로써 2005년 이후 특별대우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2004년에 협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특별대우를 지속할 경우 상대국들이 수용 가능한 추가 양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특별대우가 중단될 때는 일반관세로 전환(관세화)한다는 내용도 있다. 참고로 관세화는 관세 이외의 국경보호조치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블리여건 속 관세화 유예 협상

UR 당시에 관세화로 전환한 농산물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최소시장접근은 이행 첫해에 소비

량의 3퍼센트를 개방하고 이를 마지막 연도에 소비량의 5퍼센트로 늘리는 것이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쌀에 대해 특별대우를 받았지만 의무수입물량은 첫해 4퍼센트에서 6년차에 8퍼센트로 늘린다는 조건이었다. UR의 이행기간은 선진국은 6년, 개도국은 10년이었다.

우리나라 쌀의 특별대우 조건은 일본보다 유리하고 위에 설명한 일반적인 농산물보다 유리한 조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3년 12월에 김영삼대통령은 "고립을 택할 것인가,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쌀 시장 개방에 대하여 사과하였다. 이는 쌀은 한 톨도 수입하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것이었다. 김대통령은 이 담화문의 말미에 "이를 우리 농업의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우리 농업이 새롭게 출발하고 구조조정이 착실히 실천되었다면 2004년의 쌀 협상은 불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쌀 협상은 기본적

으로 협정문에 따라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조건을 협상하는 것이고, 관세화 전환시에는 협상과정을 거치지 않고 협정문 부속서 첨부물에 규정된 대로 관세율을 계산하여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관세화된 품목은 정해진 관세만 납부하면 누구든지 해당 상품을 수입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만으로 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 쌀값에 관세를 합친 국내 판매 가격이 국내쌀값보다 높거나 크게 낮지 않아야 한다. 국제쌀값과 관세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있다. 따라서 국내쌀값을 낮추는 것이 관세화에 대한 준비 수단 중의 하나이다. 물론 떨어지는 소득보전을 위한 수단은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이다.

관세화 준비의 다른 수단은 품질고급화를 통한 시장차별화이다. 쌀의 품질 제고,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한 소비자 신뢰의 확보, 주문에 따라 탈곡한 후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하는 직거래 등도 모두 시장차별화의 방법들이다. 1995년 이후 10년간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였고 일부의 성공도 거두었지만 아직 노력할 여지가 크다.

우리는 지난해 불리한 여건 속에서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조건을 협상했다. 결과적으로 관세화 유예를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하는 데에 합의했다. 그 댓가는 의무수입량의 증량과 수입쌀의 시판이다. 앞으로 WTO의 검증과 국회의 비준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들 과정이 관세화 유예 10년 연장이라는 기본 틀을 뒤집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DDA 세부원칙이 합의되는 몇년 후에 조기관세화를 검토하는 것은 예상해 볼 수 있다.

2014년까지 연장, 경쟁력 제고시간 확보

정부는 작년 초 쌀 협상 개시의사를 WTO에 통보한 이래 협상 참여 의사를 표명한 미국, 중국 등 9개국과 50여 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협상 결과 작년 말 쌀에 대한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WTO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통보되었다. 정부가 WTO에 통보한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하며 이행 5년차인 2009년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 점검을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둘째, 의무수입물량은 2005년 225,575톤(1988~90년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8,700톤(7.96%)까지 균등하게 늘려 나간다.

셋째, 의무수입물량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을 유지하되 2005년도에 의무수입물량 중 10퍼센트인 22,600톤을 시장에 판매하고 이 비중을 6년차인 2010년에 수입량의 30퍼센트인 98,000톤까지 늘려서 2014년까지 이 비율을 유지하므로 최종년도 시판량은 122,600톤에 달하게 된다.

넷째, 의무수입물량 중 기존물량(205천톤)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우리나라 시장점유율을 반영하여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고 증량된 신규물량은 모든 회원국에 입찰을 개방하는 최혜국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번 협상 결과 우리는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지속함으로써 일단 쌀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다. 어려운 협상을 통해서 확보한 추가적인 관세화 유예 기

간은 우리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 쌀 농가 소득보전의 기반 위에 쌀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다.

다양한 직불제 시행, 미래 어둡지 않아

쌀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득을 안정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정부는 농업인, 전문가와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쌀 농가 소득안정방안을 마련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쌀소득보전직불제시행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첫째,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목표 소득수준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3년 단위로 변경한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목표 소득수준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평균 산지쌀값, 추곡수매제를 소득효과로 환산한 금액, 논농업직불액 등을 기초로 80kg 가마당 17만원으로 설정하였다. 앞으로 쌀값이 목표 소득수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를 정부가 직접지불로 보전한다.

둘째,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고정직불금은 WTO규정상 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고정금액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목표 소득수준과 당년쌀값 차이의 80퍼센트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쌀생산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셋째,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정하며, 논농업직불제의 면적상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농업인 납입금 제도는 폐지한다.

관세화 유예연장 조치와 쌀 농가 소득안정장치는 농업생산 및 농심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쌀 수급 및 농가소득 측면에서 예측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여기에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어려움이 수반된다. 이러한 정책들이 자칫 중장기적인 쌀 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소득보전 대책과 병행하여 양정제도 개편과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양정 개편은 그 효과가 한계에 도달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생산의 효율성 제고, 고품질 쌀 생산 대책, 미곡종합처리장의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등을 통한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가볍게 볼 수 없는 과제들이다. 수입쌀이 일부 시판되는 것을 계기로 표시기준, 원산지규정 등에 대한 엄정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양곡유통의 투명성 강화도 시급한 과제이다.

고비용 농업구조 속에서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반발은 '이유 있는 항변'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보상원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쌀 산업 경쟁력 강화도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다. 소득보전직불제의 철저한 시행과 최대 10년의 관세화유예기간 중 관세화에 대비한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밝다. Y

